

의안 번호	2254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울산광역시 중구 대학생 학자금 지원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</p> <h2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심사보고서</h2>
----------	------	---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5. 2.(목) 홍영진 의원 외 9명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4. 5. 2.(목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4. 5. 16.(목)

2. 제안설명 요지(안영호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울산광역시 중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하고 조문을 현행화하여 행정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취업역량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명 변경
 - (기존) 울산광역시 중구 대학생 학자금 지원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
 - (변경) 울산광역시 중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
- 연수 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운영시기, 연수기관과 신청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~ 안 제5조)
- 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연수 방법과 임금 및 실비 지원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 ~ 안 제8조)
- 증명서 등 발급 및 수여, 포상에 관한 사항 (안 제9조 ~ 안 제10조)

다. 근거법규

- 「청년고용촉진특별법」 제8조의 2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신옥범)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하고 조문을 현행화하여 행정경험의 기회를 제공 및 취업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전반적으로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 거 법 규

청년고용촉진특별법

- 제8조의2(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기업등에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등이나 경제단체 또는 대학등이 제1항에 따른 직장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고등교육법

- 제2조(학교의 종류)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
1. 대학
 2. 산업대학
 3. 교육대학
 4. 전문대학
 5. 방송대학·통신대학·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(이하 “원격대학”이라 한다)
 6. 기술대학
 7. 각종학교